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15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서도원 의원, 최재규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대상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독도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자연스럽게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도교육”이란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군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군민 참여 캠페인, 전시·강연 등 홍보사업
3. 그 밖에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독도교육주간 운영) ① 군수는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도교육주간 동안 학교, 공공기관, 지역 단체 등과 협력하여 독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독도교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 및 독도교육주간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안 제4조) 및 독도교육주간 운영(안 제5조)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지원사항(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25년 7월 국가 법령센터 기준 “독도” 관련 제명의 조례는 총 36건으로 그중 13개의 조례는 교육청 조례이며, 20곳이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임.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의 목적은 주로 ① 교육, ② 독도거주 민간인, ③ 기타(독도의 날, 시설, 출향해녀 예우 등)으로 나타남.
- 본 조례안은 기존 독도 관련 조례에서 제안되고 있는 교육을 포함한 홍보활동까지 확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공포 이전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범위 등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상황

작성자

소속 및 직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명(연락처)

박주용 (☎ 2292)